

## 7. 서울特別市 住宅建設에 대한 시세·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

서울特別市 條例 第2672號 1990. 12. 5

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 
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  
과 같이 한다.

제 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  
택 및 임대주택을 1990년 9월 1일 이  
전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  
은 자가 1991년 2월 28일까지 소유권  
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 
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  
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  
의 50을 경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조례

#### ● 제2687호(1990. 12. 31)

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  
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 
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토지 및 건축물  
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  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 
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  
례”를 “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 대한  
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 1조 중 “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 
재개발구역내”를 “도시재개발사업을 촉  
진하고자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  
지구내”로 한다.

제 2조 제1항 본문중 “재개발구역내에서

재개발사업”을 “재개발구역 및 도시저 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”으로 하고, 동조 동항 제1호 중 “시행자”를 “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”로 하며, 동조 동항 제2호 중 “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”를 “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최초고시”로 한다.

**부칙 제2항**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--

### ● 제2689호(1990. 12. 31)

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조 제2항 중 “3월”을 각각 “2월”로 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---

---

### ● 제2671호(1990. 12. 5)

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증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증 “일반재개발사업”을 “주택개량 재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제 2조증 “일반주택 재개발사업 특별회계

및 차관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”를 “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 3 장의 제목 “일반재개발사업”을 “주택 개량재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7조중 본문,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중 “주택개량재개발 및 불량주택정비사업”을 “주택개량재개발사업”으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고,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의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의 건설
2.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측량
8.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 및 매입비
9.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을 위한 택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

10.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

제 8 조중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중 차관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